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을 추가(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24조, 안 별표1)

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튜닝인증부품”과 “튜닝안전확인부품” 추가(안 제4조제2항)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17.(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